

서비스 이용약관 신규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 9 조 (이용신청의 승낙)</p> <p>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9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4. 이용신청 시 기재하는 필수항목 또는 그 밖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한 경우 5.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동일한 경우 6. 이 약관 제33조에 의해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전(前)회원이 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이 약관 제33조에 의해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p>제 9 조 (이용신청의 승낙)</p> <p>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9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4. 이용신청 시 기재하는 필수항목 또는 그 밖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한 경우 5.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동일한 경우 6. 이 약관 제36조에 의해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전(前)회원이 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이 약관 제36조에 의해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p>제 15 조 (회사의 지위 및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p> <p><신설></p>	<p>제 15 조 (회사의 지위 및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p> <p>⑥ <u>펫시터는 회사와 별도의 중개계약 등에 따라 위탁 펫시터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며, 회사가 펫시터와의 계약관계 또는 서비스 운영기준에 따라 검토·처리하는 사항은 회사와 펫시터 사이의 계약상·운영상 사항에 해당합니다.</u></p> <p><u>의뢰인이 특정 펫시터에 대한 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 서비스 이용 제한, 매칭 제한, 경고, 자격 제한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그러한 요청만으로 해당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조치의 실시 여부, 구체적 내용, 순위, 시기, 사유 및 결과 등 펫시터의 개인정보 또는 회사와 펫시터 사이의 계약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나 통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뢰인에게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서비스의 종류)</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1. 중개서비스 : 회사가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 없이 펫플래닛을 통해 회원 간의 반려견 위탁 펫시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market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p> <p>2. 안전결제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펫플래닛에서 회사 또는 외부 결제대행 전문업체의 결제시스템을 연결해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p> <p>3. 기타서비스 : 정보서비스, 고객센터 운영 서비스 등</p>	<p>제16조 (서비스의 종류)</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1. 중개서비스 : 회사가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 없이 펫플래닛을 통해 회원 간의 반려견 위탁 펫시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market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p> <p>2. 안전결제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펫플래닛에서 회사 또는 외부 결제대행 전문업체의 결제시스템을 연결해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p> <p>3. 기타서비스 : 정보서비스, <u>고객센터</u> 운영 서비스 등</p>
<p>제19조 (의뢰계약 체결)</p> <p>⑤ 의뢰인은 펫플래닛 보호자(의뢰인) 동의서 및 정책확인서에 동의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p>	<p>제19조 (의뢰계약 체결)</p> <p>⑤ 의뢰인은 펫플래닛 보호자(의뢰인) 동의서 및 <u>이용정책</u>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p>
<p>제20조 (고지의무)</p> <p>① 의뢰인은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진행을 위해 대상 반려견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하 "필수정보"라 합니다)을 펫시터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p> <p>1. 대상 반려견의 성격, 사회성, 공격성, 분리불안 등의 특성</p> <p>2. 대상 반려견의 사람 및 다른 반려견을 향한 공격 이력</p> <p><신 설></p> <p>3. 대상 반려견의 산책 습관 및 탈출 이력</p> <p><신 설></p> <p>4. 대상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주요 병력, 예방주사 접종여부, 알레르기 여부 등(선천적 및 진행 중인 관절, 슬개골 질병 등 포함)</p> <p>5. 대상 반려견의 중성화수술 여부(의뢰계약에서 발생한 교배 및 임신의 문제에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p> <p>6. 대상 반려견의 전염성 질환 감염 여부</p> <p>7. 대상 반려견의 투약 정보</p>	<p>제20조 (고지의무)</p> <p>① 의뢰인은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진행을 위해 대상 반려견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하 "필수정보"라 합니다)을 펫시터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p> <p>1. 대상 반려견의 성격, 사회성, 공격성, 분리불안 등의 특성</p> <p>2. 대상 반려견의 사람 및 다른 반려견을 향한 공격 이력</p> <p>3. 대상 반려견의 <u>입질, 물어뜯기 등 행동 이력, 신체 접촉에 대한 예민도, 낯선 사람 등에 대한 경계·공격 반응 등의 행동 특성</u></p> <p>4. 대상 반려견의 산책 습관 및 탈출 이력</p> <p>5. 대상 반려견의 <u>배변 습관, 반복적 마킹, 구토 이력, 가구·리류·물품 등에 대한 물어뜯기·긁기·파손 행동 등의 특성</u></p> <p>6. 대상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주요 병력, 예방주사 접종여부, 알레르기 여부 등(선천적 및 진행 중인 관절, 슬개골 질병 등 포함)</p> <p>7. 대상 반려견의 중성화수술 여부(의뢰계약에서 발생한</p>

현 행	개 정 안
<p>8. 기타 위탁 펫시터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p>	<p>교배 및 임신의 문제에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p> <p>8. 대상 반려견의 전염성 질환 감염 여부</p> <p>9. 대상 반려견의 투약 정보</p> <p>10. 기타 위탁 펫시터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p>
<p>제20조 (고지의무)</p> <p>③ 회사는 7세 이상 노령견 및 신경, 발작 질환 등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의사 소견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제20조 (고지의무)</p> <p>③ 회사는 <u>8세</u> 이상 노령견 및 신경, 발작 질환 등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의사 소견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제20조 (고지의무)</p> <p>⑩ 제9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의뢰인은 프로필 정보를 수정한 후 이용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정 내용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거부 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6조에 따른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제20조 (고지의무)</p> <p>⑩ 제9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의뢰인은 프로필 정보를 수정한 후 이용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정 내용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거부 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u>제44조</u>에 따른 <u>고객센터</u>를 통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제21조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진행)</p> <p>⑨ 의뢰인은 대상 반려견, 특히, 1세 이하의 퍼피 또는 7세 이상의 노령견의 경우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의뢰계약기간 동안 및 그 이후 가정 복귀 후에도 적응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하 생략)</p> <p>⑩ 의뢰계약기간 동안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질병(선천적 및 진행 중인 관절, 슬개골 질병 등 포함)이 악화되거나, 7세 이상 노령견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점진적 저하(피부 장벽 약화, 잇몸 약화 등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펫시터와 회사의 귀책사유는 통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하 생략)</p> <p>⑪ 7세 이상의 노령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의 반려견, 잇몸·치아·피부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반려견, 또는 입질·거부 반응 등으로 인해 위생 관리의 정상적인 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다고 합리</p>	<p>제21조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진행)</p> <p>⑨ 의뢰인은 대상 반려견, 특히, 1세 이하의 퍼피 또는 <u>8세</u> 이상의 노령견의 경우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의뢰계약기간 동안 및 그 이후 가정 복귀 후에도 적응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하 생략)</p> <p>⑩ 의뢰계약기간 동안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질병(선천적 및 진행 중인 관절, 슬개골 질병 등 포함)이 악화되거나, <u>8세</u> 이상 노령견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점진적 저하(피부 장벽 약화, 잇몸 약화 등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펫시터와 회사의 귀책사유는 통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하 생략)</p> <p>⑪ <u>8세</u> 이상의 노령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의 반려견, 잇몸·치아·피부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반려견, 또는 입질·거부 반응 등으로 인해 위생 관리의 정상적인 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다고 합리</p>

현 행	개 정 안
<p>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펫시터는 위생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p> <p>⑭ 의뢰인은 7세 이상의 노령견이나 고지된 지병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 위탁 돌봄 환경과 무관하게 기저 질환의 악화나 노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또는 사망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하 생략)</p>	<p>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펫시터는 위생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p> <p>⑭ 의뢰인은 <u>8세</u> 이상의 노령견이나 고지된 지병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 위탁 돌봄 환경과 무관하게 기저 질환의 악화나 노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또는 사망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하 생략)</p>
<p>제23조 (펫시터의 취소 등)</p> <p>⑤ 펫시터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뢰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취소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2. 의뢰계약에 따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본인의 중대한 사고 및 상해·질병 3. 의뢰계약 성립 이후 직계가족의 입원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p>제23조 (펫시터의 취소 등)</p> <p>⑤ 펫시터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뢰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취소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4촌</u> 이내 친족의 사망 2. 의뢰계약에 따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본인의 중대한 사고 및 상해·질병 3. 의뢰계약 성립 이후 직계가족의 입원 4. <u>상주건의 응급상황, 긴급 진료·입원, 실종 또는 사망으로서 의뢰계약에 따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u>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p>제38조의2</p> <p><신 설></p>	<p><u>제38조의2 (펫시터 사업장 내 재산적 손해 등에 관한 책임 귀속)</u></p> <p>① <u>펫시터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대상 반려견을 위탁 펫시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신의 주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위탁받아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상 반려견의 행동 특성, 새로운 환경에 따른 적응 스트레스, 배변 실수, 마킹, 구토, 털·냄새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파손 또는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사전에 정리·보관하는 등 사업장 내 재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펫시터는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자신의 동거가족, 방문객 등 제3자가 대상 반려견에게 불필요하게 접근·접촉하거나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하지 않도록 합리</u></p>

현 행	개 정 안
	<p><u>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u></p> <p><u>②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 기간 중 대상 반려견의 배변 실수, 마킹, 구토, 털·냄새 발생, 일시적 불안 행동 등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펫시터와 의뢰인은 이를 상호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회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펫플래닛 보호자(의뢰인) 동의서 및 정책확인서」를 통하여, 본 항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u></p> <p><u>③ 펫시터가 독립적 사업자로서 위탁 펫시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대상 반려견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또는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경미한 훼손, 오염, 배변 실수, 마킹, 구토, 털·냄새 발생</u> <u>2. 세탁·소독 통상적인 청소 또는 부분 복구를 통하여 통상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회복이 가능한 침구류, 커버, 패드, 러그, 카페트, 소파 커버 등의 경미한 오염</u> <u>3. 대상 반려견의 산책 중 발생한 전도·낙상 등 펫시터 자신의 신체 손해로서, 펫시터에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관리·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u> <u>4. 객관적 재산 손해 또는 신체 손해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심리적 불쾌감, 냄새에 대한 주관적 불편, 위생에 대한 주관적 판단 또는 통상적인 사용상 불편에 그치는 손해</u> <u>5. 펫시터의 동거가족, 방문객 등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손해.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수행 주체는 펫시터이고 해당 제3자는 위 서비스의 수행 주체가 아니므로, 제3자가 대상 반려견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접촉 (만지거나, 안거나, 이동시키거나, 보호·급여·산책하는 등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또는 펫시터가 제1항에 따른 제3자 접근·접촉</u>

현행	개정안
	<p><u>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손해로 봅니다. 다만,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호는 펫시터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으로서, 신체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u></p> <p><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펫시터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대상 반려견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관리·통제 및 안전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펫시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의뢰인이 제20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대상 반려견의 배변 실수 또는 습관, 마킹 이력, 구토 이력, 노령, 질병, 분리불안, 입질, 물어뜯기·긁기 습관, 현저한 파손행동 등 재산상 손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u> <u>2. 의뢰인이 제20조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u> <u>3. 배변 사고, 마킹, 구토, 물어뜯기, 긁기 등으로 인한 오염 또는 훼손이 그 횟수, 범위, 정도, 발생 부위, 복구 가능성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u> <u>4. 소파, 러그, 카펫, 침구류, 커버, 패드, 벽지, 가구, 전자제품 등 사업장 내 물품에 기능적 손상, 구조적 파손, 찢김, 변색, 통상적인 세탁·소독을 통하여 제거되지 아니하는 악취 잔존 등이 발생하여 세탁·소독·수선 또는 부분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생상 폐기가 불가피한 경우. 다만, 손상의 정도, 변색의 정도, 악취의 강도 등 그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은 손상 부위에 대한 사진·영상 자료, 전문 세탁·청소업체의 클리닝 견적서 또는 복구 불가 확인서, 가구·전자제품 등 해당 분야 사업자의 수선·복구 견적서 또는 복구 불가 확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u>

현 행	개 정 안
	<p><u>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u></p> <p>5. <u>의뢰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u></p> <p>6. <u>의뢰인이 제20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대상 반려견의 사람에 대한 공격성, 입질 이력, 특정 접촉에 대한 예민함, 낯선 사람 또는 동거가족에 대한 경계·공격 반응 등 제3자의 신체 손해 발생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3항 제5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본호는 제21조 제20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합니다.</u></p> <p>⑤ <u>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중 재산상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릅니다.</u></p> <p>1. <u>세탁·소독·복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세탁·소독·복구 비용</u></p> <p>2. <u>수선 또는 부분 교체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선비 또는 부분 교체 비용</u></p> <p>3. <u>일부 사용이 가능한 경우: 구매 시기, 사용 기간, 물품의 기존 상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목별 내용연수표 또는 그에 준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감가상각 후 잔존 가치</u></p> <p>4. <u>폐기가 불가피한 경우: 구매 시기, 사용 기간, 기존 상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목별 내용연수표 또는 그에 준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 동종·유사 물품의 중고가액 및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의 교체 비용</u></p> <p><u>신체 손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 통원 교통비 등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를 기준으로 하되, 손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펫시터의 관리·통제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u></p> <p>⑥ <u>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손해라 하더라도, 그 손해가 펫시터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거나, 펫시터가 제1항에 따른 재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주의의무 또는 제3자 접근·접촉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u></p>

현행	개정안
	<p>또는 확대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p> <p>⑦ 본 조에 따라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자 하는 펫시터 또는 신체 손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를 발견한 때부터 지체 없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종료 후 7일 이내에 손해 발생 사실, 손해의 정도 및 청구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의 성질상 위 기간 내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펫시터 또는 신체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그 사유를 함께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사진, 영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 교통비 영수증, 세탁·소독·수선 견적서, 영수증, 구매내역, 제품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반박자료 또는 사실관계 확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⑧ 신제품 가격 기준의 전액 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구매 시기, 사용 기간, 기존 상태, 손상 정도, 복구 가능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5항 제4호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교체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p> <p>⑨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펫시터의 개인 소유 물품 또는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반적인 가구·생활용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펫시터가 고가품, 귀중품, 파손 또는 오염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정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p> <p>⑩ 본 조는 펫시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p> <p>⑪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펫시터와 의뢰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양 당사자의 요청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4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일환으로 고객센터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분쟁 조정 지원은 의뢰인과 펫시터 사이의 분쟁 해</p>

현행	개정안
	<p><u>결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 또는 보증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분쟁 조정 지원 과정에서 표명한 의견, 제안, 사실관계의 정리 또는 평가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권리·의무의 확정 또는 자백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사후 소송 등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원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u></p> <p><u>⑫ 제3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회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중재안 또는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제안은 법적 의무에 따른 배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의뢰인과 팻시터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u></p> <p><u>⑬ 본 조에 따른 팻시터 또는 그 동거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 또는 「안전보상 프로그램 약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본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뢰인과 팻시터 사이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팻시터 또는 그 동거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손해에 관하여 책임보험 또는 안전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 또는 감면되며, 동일한 손해에 대한 이중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본 항은 보험회사 또는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u></p> <p><u>⑭ 본 조에서 정한 팻시터의 주의의무, 관리·통제의무, 제3자 접근·접촉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의뢰인과 팻시터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귀속 및 분쟁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가 본 조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에 따라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는 사정만으로 팻시터의 독립적인 사업자성이 부정되지 아니합니다.</u></p>
<p>제40조 (면책조항)</p> <p>⑧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 소송, 손해배상청구 기</p>	<p>제40조 (면책조항)</p> <p>⑧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 소송, 손해배상청구 기</p>

현 행	개 정 안
<p>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관하여 그 분쟁의 당사자 또는 법적 책임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가 분쟁조정 지원,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안내, 사실관계 확인 또는 처리방안 안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p>	<p>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관하여 그 분쟁의 당사자 또는 법적 책임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가 분쟁조정 지원, <u>고객센터</u>를 통한 안내, 사실관계 확인 또는 처리방안 안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p>
<p>제44조 (분쟁해결)</p> <p>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p>	<p>제44조 (고객센터 및 분쟁해결)</p> <p>① <u>회사는 회원의 불만 접수, 문의 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회원은 플랫폼 내 고객센터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 회원정보, 결제, 환불, 서비스 이용, 의뢰계약 관련 불만사항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u></p> <p>② <u>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불만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하며, 사실관계 조사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u></p> <p>③ <u>이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u></p> <p>④ <u>회원 간 의뢰계약 또는 위탁 펫시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은 원칙적으로 회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회사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분쟁 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u></p> <p>⑤ <u>회사가 회원의 신고, 민원, 분쟁조정 요청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검토하는 경우, 회사는 접수 내용, 서비스 기록, 채팅 내역, 영상자료, 관계자의 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하여 처리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우선 처리 일정을 안내하고,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안내합니다.</u></p> <p><u>다만, 펫시터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계약 해지, 재계약</u></p>

현 행	개 정 안
	<p><u>거절, 서비스 이용 제한, 경고, 자격 제한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의 실시 여부, 구체적 내용, 수위, 시기, 사유 및 결과는 해당 펫시터 또는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상·운영상 사항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보호되는 개인정보 또는 제3자의 권익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다른 회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합니다.</u></p> <p><u>⑥ 회사의 분쟁 처리, 신고·민원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회원 또는 펫시터 관련 조치 기준, 내부 검토 절차, 위험도 판단 기준,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 기타 이에 준하는 세부 내부 운영정책은 회사의 내부 관리 기준, 영업상 비밀 또는 운영 노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열람·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u></p> <p><u>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 본인의 서비스 이용, 환불, 보상, 이용제한 또는 분쟁조정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처리 결과, 처리 일정 또는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u></p>
<p>제46조 (불만접수 등)</p> <p>회사는 회원의 불만접수 또는 분쟁조정을 위해 회사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원정보, 결제, 환불 등 불만접수 및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제46조</p> <p><삭 제></p>